

**참고2 대학축제 관련 주류 소매업자 유의사항 문답**

[안내문]

**-대학축제 관련-  
주류 소매업자 유의사항(문답)**

**Q. 소매점(편의점, 슈퍼, 마트) 는 누구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요?**

**A. 소매점이 보유한 의제주류(일반소매) 면허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야 합니다.**

최종소비자란 주류를 구입하여 음용하는 소비자를 의미하며, 주류가 축제 기간 중 대학 교내 주점 등을 통해 재소매가 될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무면허 도매행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주류 도매행위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최대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소매점은 주류를 전화로 주문 받아 배달 판매할 수 있나요?**

**A. 주류는 전화 등 비대면 창구를 통해 주문 받아 배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결제하고 해당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주류를 비대면 통신판매하는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따라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3 자주 묻는 질문사례

Q. 대학축제 기간 동안 잠시 주점을 운영하는데도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한가요?

A. 주점에서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판매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대학축제 주점운영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조리장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영업신고
- [주류면허법]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 [조세범처벌법]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9백만원 이하의 벌금

Q. 주류 실수요자증명으로 구입한 주류를 주점에서 판매하는 경우와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주류를 축제현장에서 음용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A. 주류를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 도매업체로부터 주류구매가 가능하므로

- 실수요자증명으로 구입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 위반행위임
- 대학 내 음주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구매하여 축제현장에서 음용하는 것은 주세면허법 위반행위가 아님

Q. 축제기간에 노상주점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주류 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9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 규정 : 조세범처벌법 제6조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6조

Q. 대학축제 주점에서 메뉴를 주문하면 주류를 공짜로 준다는 식의 운영은 문제가 없나요?

A.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면허법 제8조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직접 운영자의 계산으로 구입·조리한 주류와 안주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주류를 포함한 안주, 서비스 및 장소 등을 제공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주류와 함께 안주, 서비스 및 장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실질적인 주류 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류면허법 위반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Q. 학생회에서 주류를 대량구매 후 학생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판매X] 실수요자증명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주류 판매 목적이 아닌 실제 소비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류 실수요자 증명신청서[별지 제61호 서식]를 접수하여야 합니다.